

의안번호	2202309
의 퇴 인	조배숙의원
회 답 일	2024.8.7.
추 계 번 호	24B223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 2 신설 (거점도시 등의 대도시권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¹⁾ 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이 조에서 "거점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제2조제1호에 따라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함. 이 경우 제2조제2호 가목 ²⁾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거점도시로" 보고, 같은 호 나목 및 제2조제3호 ³⁾ 중 "시·도"는 "시·도 및 거점도시"로 봄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2조의 2 신설 (거점도시 등의 대도시권 적용에 관한 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의 거점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권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 3)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⁴⁾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도와 거점도시를 추가하고 있어 대도시권에 대한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 제10조⁵⁾ 및 제10조의2⁶⁾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에 대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광역철도 제외)에 필요한 비용 지원,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등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인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인 전주시, 제주시, 춘천시가 거점도시가 되고, 이 거점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가 지정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 추가될 수 있음
 - － 동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대도시권을 권역별로 지정하고 있음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5)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제3항~제8항 생략)
- 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⑩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부담할 수 있다.

6)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표 1] 대도시권의 범위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원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자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그런데 현재 특별자치도의 거점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도시권에 편입될 지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알 수 없고, 새롭게 편입되는 도시 및 인접도시의 광역교통시행계획, 동 계획에 따른 광역교통 시설 건설 및 개량 계획, 광역버스운송 계획 및 해당 계획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III.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권역별 투자계획(2021~2025년)

[4차 시행계획의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 사업비 (A+B+C)	2020년 까지 (A)	연차별 투자계획						2025년 이후 (C)
			계(B)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도권	183,476	37,713	61,352	9,305	14,970	21,398	9,439	6,240	84,412
부산·울산권	16,817	1,964	1,175	67	107	151	320	529	13,678
대구권	10,213	1,954	5,117	1,151	580	1,277	866	1,243	3,142
광주권	5,071	—	670	20	76	118	202	255	4,401
대전권	11,878	561	2,312	87	493	606	565	561	9,005
합계	227,455	42,192	70,625	10,630	16,226	23,550	11,392	8,828	114,638

주 1. 국비 기준

2. 시행계획 상 투자계획은 재정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